

예산총칙

2019년도 추경 1 회

제 1 조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638,486,339	19,154,590
일반회계	565,473,554	16,964,207
특별회계	73,012,785	2,190,384
공기업특별회계	43,223,145	1,296,694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18,129,648	543,889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25,093,497	752,805
기타특별회계	29,789,640	893,689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850,704	25,521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30,000	900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833,362	25,001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4,616,792	138,504
수질개선 특별회계	4,750,864	142,526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733,960	22,019
농업발전자금 특별회계	17,973,958	539,219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01,520,321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지방채차입한도액은 14,400,000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